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(약칭: 국방과학기술혁신법)



[시행 2024. 7. 10.] [법률 제19948호, 2024. 1. 9., 일부개정]

국방부 (국방연구개발총괄과) 02-748-5416

방위사업청 (기술정책과-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) 02-2079-6388

방위사업청 (기술정책과-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, 개발성과물 (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등)) 02-2079-6387

방위사업청 (기술정책과-기술료 및 기술이전) 02-2079-6384

방위사업청 (기술정책과-국방과학기술 지식 · 정보 관리 및 연구개발장려금) 02-2079-639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무기체계"란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를 말한다.
- 2. "국방과학기술"이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의 개발・제조・가 동・개량・개조・시험・측정 등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말한다.
- 3. "국방과학기술혁신"이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첨단기술을 확보·활용하여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- 4. "미래도전국방기술(未來挑戰國防技術)"이란「방위사업법」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(所要)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말한다.
- 5. "국방연구개발"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.
 - 가. 무기체계의 연구개발
 - 나.「방위사업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
 - 다.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
 - 라.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
 - 마. 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
- 6. "개발성과물"이란 국방연구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[시제품(試製品) 및 시작품(試作品)을 포함한다]. 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,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.
- 7. "대학"이란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・산업대학・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- ② 기업, 대학,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등(이하 "연구기관등"이라 한다)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국방과학기술혁신의 기본원칙)**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에 국내연구개발 우선 고려
 - 2.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사전 확보
 - 3. 국방과학기술정책의 개방화 촉진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
 - 4.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민간의 성숙된 기술 활용 및 국제적인 협조체계 구축
 - 5. 미래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 추진
- **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

- 제6조(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)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5년마다「방위사업법」제 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
 - 3.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확대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④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한다.<신설 2024. 1. 9.>
 - ⑤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24. 1. 9.>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4. 1. 9.>
- 제7조(협력체계 구축 등)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방부장관은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1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 - ③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기초연구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제3장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

- 제8조(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)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,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.
 - 1.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연구개발주관기관"이라 한다)
 - 2.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연구개발참여기관"이라 한다)
 -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.
 - ④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등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계약 또는 협약 체결원칙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.
 - ⑤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「방위사업법」제46조 및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⑥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「방위사업법」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(이하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- ⑦ 제1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·변경·해약에 관한 사항, 제6항에 따른 기획등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, 국방연구개발의 절차, 출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⑧ 방위사업청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「중소기업기 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.
- ⑨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"방위사업청장"은 "국방부장관"으로 본다.
- 제9조(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)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(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다른 국방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)의 범위에서 국방연구개 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. 9.>
 - 1. 제2조제5호가목・나목・라목・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로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
 - 2.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
 - 3.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
 - 5.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 - 6.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7.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
 - 8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
 - 9. 그 밖에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 -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·연구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기관등, 연구책임자·연구원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. 9.>
 -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⑦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·제재부가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,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,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,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개발성과물의 귀속 등) ① 제8조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 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제8조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. 다만,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연구시설·장비를 부담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다.
 -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중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공동 소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(사용・양도・대여 또는 수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. 다만,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식재산권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, 공동 소유에 관한 지분율, 소유권 행사의 범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) ①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그 국방연구개발에서 확보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(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.
 - 1. 연구개발에의 재투자
 - 2.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
 - 3. 참여연구원이나 기술 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
 - 4. 해당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운영경비
 - 5.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물자(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등의 개조·개 발에의 재투자
 -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활용 촉진,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·중 견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- ④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산정·징수방법, 징수절차, 감면, 분할납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

- 제12조(국방과학기술 지식・정보의 관리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・정보를 종합적・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・정보
 - 2.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 정보
 - 3.「방위사업법」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・정보
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 정보
 -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・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「과학기술기본법」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・정보 등의 관리・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관리 •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·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·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·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- **제13조(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)** ① 방위사업청장은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 유통
 - 2.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기관・단체와 대학・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
 - 3. 전문인력의 양성
 - 4.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・기술・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・협력
 - 5. 그 밖에 개발성과물의 확산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
 -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연구기관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 - ③ 개발성과물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기관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과 관련한 개발성과물의 경우에는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.
- **제14조(연구시설・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)** ① 방위사업청장은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연구개 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・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 - ②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시설·장비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.
- **제15조(우수 인력 육성 및 장려금 지급)**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연구의욕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)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방위사업법」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 - 1.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,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
 - 2.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
 - 3.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 ㆍ 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
 - 4. 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·정보의 관리
 - 5.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 · 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
 - 6.「방위사업법」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・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
 - 7. 「방위사업법」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
 - 8.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
 - 9.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장 보칙

- 제1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**제18조(비밀 유지의 의무)** 제1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9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방위사업청장이 제17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6장 벌칙

- 제20조(벌칙)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1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제19948호,2024. 1. 9.>

- **제1조**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계획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래도전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